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 추진

Adherence to the Conventions for Nuclear Liability System

김상원, 장군현, 오병주, 유선오, 강석철, 김효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19번지

요 약

체르노빌 사고 이후 비엔나협약의 개정과 보충배상협약의 채택, 파리협약 및 브뤼셀보충협약 개정, 그리고 각국의 국내법 개정 등 원자력손해배상제도 강화 경향이 이어졌다. 2001년에는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도 개정되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의 완결과 대북경수로관련 손해배상의정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CSC에 가입이 필요하다. 이 경우 CSC 가입의 방법, 필요한 국내 입법조치 사항, 기금 분담금의 부담주체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편 CSC 가입과는 별도로 V/C 가입은 국경을 넘은 손해배상의 처리에 관한 법적 안전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심층 분석하여야 한다.

Abstract

After Chernobyl accident, there has been a continuous world-wide tendency to strengthen the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system both a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such as adoption of the Protocol to Amend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the "CSC"), the amendment of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Brussels Convention supplementary thereto, and improvements of domestic nuclear liability laws in various countries. Our Nuclear Liability Act was amended too in 2001. To complete the improvement of our nuclear liability system and to cope with the issue on the protocol for the nuclear liability to be concluded between the KEDO and the DPRK in accordance with the Supply Agreement, it is required for us to adhere to the CSC. In that case, the method to become a party to the CSC, a plan to implement the Conventions in domestic legislation, the person to bear the contribution to the fund of CSC should be studied carefully. In addition to the adherence to the CSC, the adherence of the Vienna Convention should be analysed separately in depth to acquire legal stability for the settlement of transboundary nuclear damage.

1.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개요

가. 국제협약의 개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원자력산업에 요구되는 안전도는 매우 높은 수준의 엄격한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의 사고율은 극히 낮다. 그러나, 만일의 원자력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손해는 속성상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각국은 일찍부터 국내법 정비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은 손해의 처리를 위한 국제조약을 마련하였다.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OECD/NEA 주관의 파리협약(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of 29th July 1960; P/C)체제와 IAEA 주관의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V/C) 체제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조약들이 원자력 손해 배상제도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P/C 와 V/C 에는 각각 국내법상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Brussels 보충협약(Convention of 31st January 1963 Supplementary to the Paris Convention of 29th July 1960; Brussels 보충협약) 및 보충배상협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이 있고 P/C 와 W/C 의 양체제를 연결하는 공동의정서 (Joint Protocol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aris Convention; 공동의정서)가 있다.

나. 국제협약의 목적과 기본원칙

원자력손해배상협약의 기본 목적은 크게 다음 2가지로 되어 있다. i) 각국의 원자력 손해 배상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것 ii) 국경을 넘은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처리의 원칙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약상의 원칙을 보면 전자를 위하여는 원자력사업자의 엄격책임,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조치 의무, 정부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를 위하여는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재판관할권, 준거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P/C 와 V/C 의 기본원칙은 다소의 차이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같다.

다. 국제협약 체제의 구성

1) 파리협약 체제

가) 파리협약

P/C는 1960. 7. 29 채택되고 1968. 4. 발효되었다. OECD가 주관하여 채택한 협약이며, OECD 사무국장이 가입서 기탁처이다. P/C 는 V/C 와의 조화를 위하여 1964년 개정되었으며

(1968. 4. 1. 발효), 계산단위를 SDR로 바꾸기 위하여 1982년 다시 개정되었다(1988. 10. 17. 발효).

나) Brussels 보충협약

1963년 사업자의 책임액과 시설소재지국의 공적 자금으로 배상한 후에도 전보되지 아니하고 남은 손해가 있는 경우 계약국의 사후 각출로 추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국내 최저배상한도액(175백만 SDR)을 초과하는 손해로서 300백만 SDR까지의 손해를 추가로 배상하는 것이다(1974. 12. 4. 발효).

P/C 체제는 현재 OECD/NEA 주도로 개정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합의안을 도출하고 곧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비엔나협약 체제

가) 비엔나협약

V/C는 1963. 5. 21 채택되고 1977. 11 발효되었다. IAEA 주관으로 UN 가입국이 계약국을 이루고 있으며 IAEA 사무국장이 가입서 기탁처이다. 2002. 2. 현재 가맹국은 33개국이고 14개국이 서명하고 있다.

나) 보충배상협약

CSC 는 1997. 9. 29. V/C 개정의정서와 동시에 서명 개방되었다(2000. 11. 현재 14개국 서명, 3 개국 비준).

P/C에 대한 Brussels 보충협약의 필요성과 동일한 목적으로, 즉 국내제도상의 사업자의 책임액과 공적기금으로도 전보되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계약국의 사후 각출로 피해자의 손해를 추가적으로 전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협약이다.

3) 공동의정서

보충배상협약은 1988. 9. 21 채택되고 1992. 4. 27. 발효된 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손해배상 관련협약의 적용범위가 좁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P/C 와 V/C 양 협약을 연결하여 협약체제의 적용상의 보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4) 양 체제의 비교

P/C 는 가맹 대상이 OECD 가맹국이라는 일정 수준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 제국에 한정되어 있어 균질의, 수준 높은, 상호 제휴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약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V/C 는 국제연합에 가맹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가맹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 국가의 가맹이 용이하도록 파리협약에 비하여 규정이 약간 완화되어 있다.

협약으로서의 보편성 관점에서 보면, P/C의 가맹국은 모두가 유럽대륙 국가들이므로 OECD 가맹국의 협약이라고는 하나, 현재 P/C는 결과적으로는 유럽제국의 협약으로 되어 있고, V/C 는 거의 대부분이 발전도상국이 가맹국으로 되어 있다. 세계 주요 원자력 개발국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스웨덴은 P/C 에 가맹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캐나다, 우리나라 등은 어느 협약에도 가맹

하고 있지 않다.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발전용 원자로시설 중, 현재 P/C 하에 있는 것이 전체의 약 34%, V/C 하에 있는 것이 전체의 약 6%로서 양 협약을 합하여 약 40%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이 되고 있는 세계 원자력 시설의 범위나 가입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 협약은 다 같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강화

가. 제도강화의 배경과 강화 내용

체르노빌 (Chernobyl) 사고를 계기로 P/C 와 V/C 는 첫째, 배상책임한도(및 배상조치액)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둘째, (구) 소련 등 주요 원전 보유국, 특히 사고발생지국이 이들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협약의 적용범위가 좁아 국경을 넘은 방사선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대비가 미흡함이 드러났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국제적, 국내적 차원에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그 목적은 첫째, 협약의 적용범위를 넓히고 둘째, 손해배상책임 수준의 인상, 면책사유의 축소 등 사업자 책임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국은 첫째의 목적을 위하여는 공동의정서(J/P)를 채택·발효하게 하고,

둘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V/C 를 개정하고('97. 9.)하고 같은 날 보충배상협약을 채택, 서명개방하였다 ('97. 9.).

아울러 각국은 이와 함께 국내 손해배상제도 강화를 위한 입법조치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국제협약에의 가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나. 공동의정서의 채택, 발효

체르노빌 사고 후 국제협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지국인 구소련이 어느 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국제협약상 원칙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국가는 동구 제국과 OECD 가입국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구 소련이 어느 한 협약에 가입하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해당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동 협약에 의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손해배상협약의 적용범위 확대가 절실함을 실감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P/C 나 V/C 중 어느 한 협약의 당사국은 자신이 가입하지 아니한 협약의 당사국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공동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P/C 와 V/C를 연결하여 협약 적용범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다. 비엔나협약의 개정

1997. 9. 29. IAEA 는 10여년에 걸쳐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외교회의에서 V/C

개정 의정서를 채택하고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였다. V/C 는 최저배상책임한도 인상, 원자력손해의 범위확대, 면책사유 축소, 인적 손해의 소멸시효 연장 등을 위한 것으로 2001. 12. 현재 15개국이 서명하고, 4개국이 비준하였다.¹⁾ 발효요건은 5개국 비준서 기탁 3개월 후이다.

라. 보충배상협약

국내 배상책임 한도액을 소진하고도 전보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 손해의 전보를 위하여 만일의 원자력사고시 체결국들이 사후에 부담금을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추가로 전보하는 보충배상협약을 채택하고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였다(비엔나협약 개정의정서 서명개방과 동시).

이 협약은 첫째, 기본적으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둘째, 국내법상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대규모의 원자력사고발생시 체결국 상호간에 약정된 부담금을 각출하여 초과손해를 전보하는 협약이고, 셋째, 체결국은 사전에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 사후에 부담금을 각출하여 기금을 형성하는 상호부조적 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²⁾

1)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63년 V/C	'97년 V/C 개정의정서
최저 책임한도액	US\$ 500만 ¹⁾	3억 SDR
원자력손해의 개념	- 사망, 신체상해 - 재산의 멸실훼손	- 사망, 신체상해 - 재산의 멸실훼손 - 환경손해 (환경관련 일실 이익, 환경복구비용) - 예방조치 비용
지리적 적용범위	- 규정 없음 ³⁾	- 비체약국내 발생원자력 손해 적용 명시
물적 적용범위	- 규정 없음	- 비평화적 시설에 적용 않음
면책사유	- 전쟁 등 적대행위 - 중대한 천재지변	- 전쟁 등 적대행위 (천재지변 삭제)
소멸시효	- 10년 - 손해 및 책임질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⁵⁾	- 10년. 단, 인적손해는 30년 - 손해 및 책임자업자 안 날로부터 3년
재판관할권	- 사고발생지국	- 사고발생지국 -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안국 관할권

2) 보충배상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요건을 보면, i) 체결국은 V/C 또는 P/C 가입국이거나, 체결국 국내법이 협약 부속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ii) 원자력안전협약 가입 국가일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각체약국의 부담금 형성을 보면 다음 ① 과 ②를 합한 금액이다.

① 체결국 원자력설비용량(MWth) × 300 SDR

기금조성을 위한 분담금은 각 계약국의 시설용량과 UN 분담률에 비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 하에 협약 가입시 우리가 분담할 분담금은 약 12 - 15 백만 SDR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³⁾ 원자력사고 조성된 기금의 50%는 국·내외 손해에, 50%는 국외 손해에 사용된다.

이 협약은 '00. 11월 현재 14개국(이중 3개국)이 비준하였다. 발효요건은 5개국 가입으로부터 90일 후이며 다만 가입국 설비용량 합계 40만 Thermal MW 이상이어야 한다.

마. 파리협약 및 브뤼셀보충배상협약 개정

현재 OECD/NEA 주관으로 개정작업 중이며, 개정안 초안이 나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 손해배상책임한도액은 사업자의 책임(1st Tier)이 7억 유로, 계약국 국내조치 한도액(2nd Tier)이 5억 유로, 보충배상협약상의 보충배상(3rd Tier)이 3억 유로로 대폭 인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국내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체르노빌 사고후 P/C 체제와 V/C 체제의 강화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세계 각국(자국의 국내 원자력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원자력손해배상제도가 없었던 러시아나 동구 제국이 동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일본도 손해배상조치액 수준을 600억 엔으로 인상함으로써 개정 V/C를 수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바꾸었고, 행정부의 질의회시 형식(Guo Han)으로 미미한 수준의 책임한도를 포함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중국도 손해배상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 1. 비엔나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 손해배상제도의 수준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한책임을 지던 사업자의 책임에 3억 SDR의 한도를 새로이 정하여 유한책임제도로 전환하였다.

② (계약국 원자력설비용량 합계 × 300 SDR) × 0.1 × 계약국 UN 분담률/계약국 UN 분담률 합계

셋째, 조성된 기금은 50%는 국내·외 피해자에, 나머지 50%는 국외 피해자에 사용된다.

넷째, 3억 SDR이상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국은 IAEA 통보 및 기금조성을 요청하고, 타국의 사고시에는 위 분담률에 따라 자국의 기금분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국은 원자력시설 목록 및 그 변경사항을 IAEA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협약의 발효요건은 계약국들의 원자력총설비용량이 40만 Unit를 초과하고, 5개국 이상이 비준후 90일경과시 발효한다.

3) 이는 현재 비준국인 아르헨티나와 루마니아(Morocco 는 비원자력국으로 부담액이 미미하므로 편의상 제외함),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이 가입한다면 시나리오로 추산하였다. 즉, 한국의 설비용량 40,417 Units, 5개국 설비용량 총량이 483,614 Units가 되고, 한국의 UN 분담률이 0.01851, 5개국의 UN 분담률 합계가 0.4457375 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분담금을 산출할 때 약 12.7백만 SDR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설비용량이 늘어나거나 UN 분담률이 늘어나면 분담액도 증액될 것이다.

둘째, 배상조치의 상한을 90억원에서 3억 SDR로 인상함으로써 의무적 배상조치 수준을 현실화 하였다. 이는 법률상의 규정이고 향후 대통령령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의 대통령령에 의하면 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하여는 부지당 500억원의 배상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손해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환경손해, 방제조치 비용 등 명시하였다. 이전의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민법상의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여 이들 환경관련 손해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었다.

넷째, 사업자의 면책사유 중 "심대한 천재지변"을 삭제하고 "전쟁 유사 사변"만을 면책사유로 남김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원자력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다섯째,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민법상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였다. 이전에는 일반법인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이의도 있어 이를 명확히 하였다. 다만, 개정 V/C의 예에 따라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30년으로 하였다.

3.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 검토

가. 보충배상협약의 가입

1) 우리나라가 보충배상협약에 가입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완결을 통한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에서는 사업자가 3억 SDR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그 부담 주체도 없다. 물론 유탁손해의 유한책임이나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유한책임의 논리와 같이 3억 SDR의 책임 뿐 그 이상에 대하여는 법률상 책임부담자도, 피해자도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피해자가 그 초과 손해를 모두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맞지 아니하고 피해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동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에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충배상협약에 가입하거나 국내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의 금액은 막대한 것이 될 수 있고 보충배상제도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대형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의 전부를 만족시키지 못할 우려도 있지만,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그만큼은 원자력손해의 피해보상을 두터이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둘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경수로공급협정에 의하면 양자간에는 별도로 원자력손해배상의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원자력사고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책임과 배상조치 수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제 국가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불식할 수 있는 내용의 의정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북한의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KEDO/한국전력공사 간의 주계약에 의하면 이 원자력손해

배상의정서를 2003. 9. 까지 체결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부품납입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walk-away)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KEDO 집행이사국은 보충배상협약(CSC)의 가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에는 집행이사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국가도 가입하여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제도 수립을 북한에 요구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국가에서도 먼저 요구수준에 상응하는 제도를 미리 마련하여야만 북한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2) 협약 가입시의 부담 - 분담금 및 배상조치 재원 -

상술한 바와 같이 CSC 에 가입하면 만의 하나 우리나라에서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는 외국의 분담금으로 추가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으므로 더 논의할 것이 없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 즉 외국의 사고시 우리의 부담은 상술한 바와 같이 12 - 15 백만 SDR로 추산되어⁴⁾ 부담주체가 누가 되는 그리 큰 부담은 느끼지 아니할 듯하다.

오히려 문제는 협약가입의 선결조건 충족에 있다. 즉, 현재로는 향후 배상조치를 유예기간 동안 (동협약 서명개방일로부터 10년) 점진적으로 증액해 나간다는 기본 방침으로 있는데, 보충배상 협약 가입의 선결조건이 우리의 배상책임한도(3억 SDR)에 해당하는 배상조치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공적자금으로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선결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배상조치 비용(보험료 또는 손해배상보상계약의 보상료)의 대폭 증액 때문에 사업자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⁵⁾. 국내 타산업의 사례(선박회사의 유탁손해, 항공회사의 항공사고의 대비 등)와 그 보험금액/보험료의 규모, 또는 외국 원자력산업의 규모 대비 배상조치 수준을 고려하여 적극 심층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협약가입시 필요한 조치 사항

CSC 에 가입할 경우 첫째, 상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조치액을 책임한도액 (3억 SDR) 수준으로 증액하여야 한다(대통령령). 이는 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보충기금 분담금의 부담주체를 정하여야 한다. 현재로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유한책임제를 택한 이상 그것은 공공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되 타국의 사고에 대한 분담금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절충적 시각도 있다.

4) 타국의 동향

4) 더욱이 이러한 분담금 부담 위험은 약 3000만원으로 추산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5) 일정한 조건하에서 추산해 보면 현재의 배상조치 비용 40억원에서 8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 한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재가 후 의회에 CSC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일본에서는 V/C 개정의정서 채택 후 바로 1999년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을 통하여 배상조치액을 600억엔으로 인상하여 등 가입조건을 갖추는 절차를 밟고 있고, 일본 원자력위원회도 개정 V/C 및 CSC 가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2002년 하반기나 2003년 상반기에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준비 중에 있는이다.

나. (개정) 비엔나협약의 가입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충배상협약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위 1. 나.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협약의 기본적 목적은 첫째, 손해배상책임의 엄격화, 강제적 배상조치 등 체약국의 손해배상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것과 둘째, 국경을 넘은 손해의 배상에 관한 관할권, 준거법, 외국 판결의 이행 등 국경을 넘은 손해의 배상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CSC 에 가입하는 것은 배상책임 한도를 늘림으로써 전자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V/C 에 가입하는 것은 후자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V/C 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인접 국가의 원자력 사고로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인접국 법원의 관할에 복속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 국적국인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일까라는 문제, 그리고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은 인접국의 법률인가 아니면 한국법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섭외적인 문제점 때문에 피해자는 관할법원이나 준거법 여하에 따라 피해구제의 가부와 정도에 있어 법적으로 불안정 상태에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V/C 에 가입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게 된다.

따라서 V/C 가입은 우리의 배상책임 한도 수준이나 지정학적 위치, 인접국의 협약 가입여부 등을 별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국내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개선작업의 완결과 대북경수로관련 손해배상의정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CSC에 가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CSC 가입의 방법, 필요한 국내 입법조치사항, 기금 분담금의 부담주체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에서는 2002년 정기국회에 비준안 상정을 목표로 CSC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V/C 의 가입은 CSC 가입문제와는 별도로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현재 V/C 와 CSC를 놓고 그 중의 하나 또는 둘 다 가입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손해배상 제도개선 방안연구, 1998. 3.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1995. 12.
3.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손해배상자료집, 1997. 7
4.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북 경수로사업 관련 각종 합의서, 1998. 12.
5. 원자력손해배상제도 및 그 개선, 『과학기술법연구 제6집』 (2000. 12.), 한남대학교
6. 박기갑, 국제원자력손해배상법, 삼우사, 2001. 3.
7. Effect of Entry Into Force of Amended Vienna Convention and Supplementary Compensation Convention, Nuclear Third Party Liability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1997. 10), Morgan Lewis & Bockius
8. Boulanenkov, V.,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Regime of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 Presentation at the IAEA Training Workshop Development of a Legal Framework for Governing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Radiological Emergencies for Countries of East Asia and the Pacific, OECD Nuclear Energy Agency, Vienna, 22 -26 November, 1999.
9. OECD/NEA, Paris Convention: Decisions, Recommendations, Interpretations, 1984.
10. OECD Nuclear Energy Agency,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an International Overview), Paris, 1994.
11. OECD, Expose des Motifs of the Paris Convention (Approved by the OECD Council on 16th November, 1982 and revised on 1st September, 1988).
12. Reyners, P., General Principles Governing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 presentation at the same workshop as referred to in reference 6 above.